

## 2014년 1월 1일 시행

### “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”

사업자가 제도에 참여하여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 
세무대리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.



12월초 세무대리인 대상 제도 설명회 개최 예정

일정,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(부가, 법인세과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구리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란?

- 사업자 간의 구리 스크랩등 거래시 공급받는 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(신한은행)에 개설한 공급자의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지정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 (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)

### 참여대상 사업자 : 구리 스크랩등을 거래하는 모든 사업자

-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("구리 스크랩등")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
  -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·통계통합품목분류표(HS코드)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 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
  -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40% 이상인 물품

### 주요 법령 사항

#### 〈부가가치세 실시간 환급〉

- 구리거래계좌에 납부된 매입자의 부가가치세(매입세액)는 그 매입자가 구리스크랩등을 매출할 때 납부된 매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실시간 환급
- 수입사업자의 경우 관세청에 납부한 수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
- 환급되지 않고 남아있는 세액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기한에 구리스크랩등 사업자(매출자)별로 국고 입금

#### 〈특례기간 신고제도 (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2)〉

-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중 구리 스크랩등을 거래한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
- 특례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일반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동일
- 신고시 구리 매입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기재된 매입세액을 구리거래계좌에 납부한 매출세액에서 환급

#### 〈구리거래계좌 납부세액 예정고지 차감 (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3)〉

- 예정고지 세액을 결정시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국고 납부된 부가가치세액 차감 결정
-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4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구리거래계좌에서 납부된 세액을 차감하여 신고 납부(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)

#### 〈세액공제 (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)〉

- 구리 스크랩 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은 경우 계좌거래금액(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)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선택하여 소득세·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신청 가능

##### ① 증기분 방식

- 산출세액에 전체 익금·손금의 합계액 중 매입자납부 관련 익금·손금의 합계액의 전년대비 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공제

$$\text{산출세액} \times \frac{[(\text{당해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}) - (\text{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})]}{\text{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}} \times 50\%$$

##### ② 당기분 방식

- 산출세액에 전체 익금·손금의 합계액 중 매입자납부 관련 익금·손금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공제

$$\text{산출세액} \times \frac{\text{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} \times 5\%}{\text{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}}$$

#### 〈미참여자 등에 대해 부여되는 불이익 (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5항, 제6항)〉

- 구리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경우, 매입자와 매출자에게 제품가액의 20%를 가산세로 부과
-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입금하지 않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불공제
-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 입금한 경우 1일 지연입금세액의 3/10,000의 가산세 부과